#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옥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6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8.

발 의 자: 송옥주·정성호·이병진

한정애・박 정・박홍근

부승찬 • 이수진 • 박해철

전용기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저소득층 가정, 한부모가정, 장애부모가정 및 장애아동이 형제·자매로 있는 가정의 영유아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암이나 백혈병 등의 중증환자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환자를 부모로 두 거나 중증환자의 형제·자매인 영유아도 어린이집 보육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, 입소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).

법률 제 호

##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
 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
  - 나.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
- 4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
  -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자
  - 나.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교육부렁으로 정하는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 국 제28조(보육의 우선 제공) ① ---가나 지방자치단체, 사회복지법 인,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 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어린이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고용정책 기본 법」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 촉진시설의 설치 · 운영을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 인이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 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 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으로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 자의 자녀 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에 해당하는 자

4의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4의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령 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 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 아

5. ~ 8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나.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중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자

에 해당하는 자가 형제자매인 영유아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교육부 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에 해당하는 자

나.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중 교육부령으로 정 하는 자

5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